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인가요?

임신·학업(자기계발)·육아·학업·퇴직준비·건강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요건**
- ①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 ③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⑤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지원내용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보전확인 후 사후지원)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월 최고 40만원을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월 최고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중소)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의 80%를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지원

지원기간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절차

전환제도 도입 및 활용(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참고> 시간선택제 전환·신규고용 지원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전환(전환형) 지원	<p>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p> <p>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p> <p>※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 후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 주25~30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월 40만원) • 간접노무비: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p>※ '17년부터 카드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의무화(수기 방법에 의한 관리 불인정)</p>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채용형) 지원	<p>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p> <p>① 무기계약 체결,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한)</p> <p>※ 정부지원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인건비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중소기업은 간접노무비 폐지 <p>※ '17년 신청기업부터 변경금액 적용</p>



똑똑하게 일하는 회사 만들기 프로젝트~

유연근무제!

제도설계부터 구축·운영까지 지원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 우리회사 유연근무제,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어떤 제도인가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장 내·외부 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전반을 진단·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장시간근로개선

교대제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 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
* 관련제도: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등

시간선택제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및 신규 도입·운영 방안
* 관련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전환, 신규채용)

일·가정 양립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설계 지원



< 그 외 컨설팅 영역들 >

- 임금체계 개선**: 직무·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
* 관련제도: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임금피크제지원
- 평가체계 구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 평생학습체계 구축**: 인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 관련제도: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학습조직화 지원 등 연계
- 노사파트너십 구축**: 전략과 연계한 노사관계 전략 수립 등 신뢰에 기반한 노사파트너십 구축
* 관련제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직무순환제, 작업시스템 개편 등 생산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부여, 현장 책임경영 구현 지원
* 관련제도: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학습조직화 지원
- 비정규직고용 구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합법적 인사관리체계 수립
* 관련제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 장년고용안정**: 장년근로시간 단축, 장년적합직무 발굴, 숙련전수 시스템 도입(멘토제),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 관련제도: 고령자고용연장지원
- 기초컨설팅**: 시간선택제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정보 및 자문 제공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은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은 우선지원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기업, 일·가정 양립 컨설팅은 50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접수

오프라인 노사발전재단 HR개발팀(02-6021-1222, 1167, 1170)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리회사는 원격근무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가 필요해요

어떤 제도인가요?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채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채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지원금을 지급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용자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종류	지원금 용도
직접 지원 최대 2천만원	시스템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시스템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용자 지원 최대 4천만원	설비·장비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p>*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p>

- (직접지원) 총 투자금액의 25%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용자지원) 총 투자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노무관리 비용이 들텐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받고 싶은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